

2021년도 제34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I. 회의 개요

- 일 시: 2021. 11. 23.(화요일), 10:30
- 장 소: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
- 참 석 자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
 - 심의위원: 권현영(분과위원장), 김민아, 박정인, 홍지만 위원
-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1.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

2. 전차(제2021-337회)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

3. 안건상정 분과위원장

<의결안건> ※ 안건 검토 보고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

- 제1호 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 중단

시정권고 심의

- 제2호 :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

4. 폐회선언 분과위원장

II. 회의내용 및 결과

1. 의결안건

- 제1호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
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192건(안건번호 제2021-163779호~164970호)
 - 회의결과: 안건번호 제2021-163779호~163782호는 웹하드를 통해 만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.

안건번호 제2021-163783호~163784호는 △△△ 블로그, ★★★★★를 통해 만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.

안건번호 제2021-163785호는 △△△ 블로그에서 영상 저작물의 일부를 제공한 사안으로, 권리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·전송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,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결함.

안건번호 제2021-163786호는 △△△ 카페에서 방송 저작물의 일부를 전송 중인 사안으로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,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.

안건번호 제2021-163966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상저작물의 복제물을 전송 중인 건으로, 심의요청된 저작물과 전송 중인 저작물이 일치하지 않아 심의요청 안건에 대해 부결함.

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,356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

하는 것으로 가결함.

○ 제2호: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

- 주요내용: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5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총 452개의 URL 정보에 관한 '구글'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 (안전번호 제2021-17819호~18270호)
- 회의결과: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5개, 총 452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.

Ⅲ. 회의 의사록

1. 개회선언
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33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.

2. 전차(제2021-337회)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
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.
- C 위원: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.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.
- B, E 위원: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.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,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.

2. 안건상정

○ 제1호 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

- 오진해 전문위원: (심의안건의 저작물명,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)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, 저작권자,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‘★★★★’, ‘△△△△△’, ‘●●●●●●●●’, ‘◎◎◎◎’, ‘■ ■ ■ ■ ■ ■ ■ ■’, ‘◇◇◇◇◇◇’, ‘◆◆◆◆’, ‘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’ 등임.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.

- 참석 위원 전원: 해당 없음.

- 권현영 분과위원장: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오진해 전문위원: 금일 심의안건은 51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367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.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.

- 오진해 전문위원: (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건번호 제2021-163779호~163782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에 게시된 만화 불법복제물임.

(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)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

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B 위원: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.
- C, E 위원 : 동의함. 가결 의견임.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-163779호~16378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.
- 오진해 전문위원: (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전번호 제2021-163783호~163784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△△△ 블로그 및 티스토리에 게시된 영상 불법복제물임.

(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)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B 위원: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.
- C, E 위원: 동의함. 가결 의견임.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-163783호~16378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

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.

- 오진해 전문위원: (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건번호 제2021-163785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요청한 건으로 △△△ 블로그에 게시된 영상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사안임.

(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)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B 위원: 블로그에 게시된 영상이 예능 프로그램 전체의 5분의 1 분량이라는 것인가?

- 오진해 전문위원: 그러함. 다만 관리자가 5분의 1 분량으로 편집한 별도의 ▲▲▲ 영상 전체를 다시 복제한 것임. ▲▲▲ 영상을 임베디드 링크로 그대로 게재하여도 본인의 블로그 광고 수입 등 수취에는 문제가 없는데, 굳이 △△△ 비디오를 통하여 다시 동일한 영상을 게재하는 것은 ▲▲▲ 광고 없이 시청이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일 수 있음. 참고로 관리자가 게시한 공식 ▲▲▲ 영상은 현재까지 조회수가 약 42만 회인데, 블로그에서 직접 전송중인 영상은 조회수가 44회임.

- B 위원: 하단 영상이 ▲▲▲에서 제공하는 영상인가?

- 오진해 전문위원: 그러함. ▲▲▲ 직접링크와 임베디드 링크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.

- A 위원: 게시물 내에 있는 글은 블로그 운영자 본인이 작성한 것인가?
- 오진해 전문위원: ▲▲▲에 게시된 관리자의 영상 소개글을 그대로 가져온 것임.
- A 위원: 게시물 하단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원저작물을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가?
- 오진해 전문위원: 그러함. 관리자의 ▲▲▲ 채널임.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그러면 안전번호 제2021-163785호에 대해 원안대로 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.
- B, C, E 위원 : 동의함. 부결 의견임.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안전번호 제2021-163785호는 관리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·전송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,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부결함.
- 오진해 전문위원: (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전번호 제2021-163786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△△△ 카페에서 영상저작물의 일부를 전송중인 사안임.

(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)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B 위원: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.
- C, E 위원: 동의함. 가결 의견임.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-16378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.
- 오진해 전문위원: (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전번호 제2021-163966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상물을 전송 중인 사안임.

(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)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E 위원: 심의요청된 저작물과 전송중인 저작물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부결 의견임.
- B, C 위원 : 동의함. 부결 의견임.
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-163966호는 심의요청된 저작물과 전송중인 저작물이 일치하지 않아 심의요청 안전에 대해 부결함.

- 오진해 전문위원: (불법복제물 제공화면, 파일 다운로드 화면,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)안전번호 제2021-163787호~163965호, 제2021-163967호~164970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, 음악, 프로그램, 게임,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.
 (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)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.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.
 (방송 ‘(방송)더 마스크드 싱어(2019)’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 안전번호 제2021-164087호 ‘(방송)더 마스크드 싱어(2019)’ 는 2019. 1. 2. ~ 2019. 2. 27. 방영한 해외 방송 프로그램으로 모바일 웹하드에서 540포인트에 배포중임.
 (방송 ‘(방송)완다비전(2021)’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)안전번호 제2021-164201호 ‘(방송)완다비전(2021)’은 2021. 1. 15. ~ 2021. 3. 5. 방영한 해외 드라마로 모바일 웹하드에서 875포인트에 판매중임.
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 2건을 포함한 2,356건에 대해 시정 권고 가결 의견임.

- 권헌영 분과위원장: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1-163967호~16497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.

- B, C, E 위원: (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)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.
- 권현영 분과위원장: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-163967호~164970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,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.

(경고,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)

“안전번호 제2021-163785호, 제2021-163966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-163779호~163782호, 제2021-163783호~163784호, 제2021-163786호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-163787호~163965호, 제2021-163967호~164970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.”

○ 제2호 :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

제2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11쪽부터 14쪽은 「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」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.

(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)

“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-17819호~18270호는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”

4. 폐회 선언

-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34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.

2020년 제34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1. 11. 30.

분과위원장 권헌영

위원 김민아

위원 박정인

위원 홍지만